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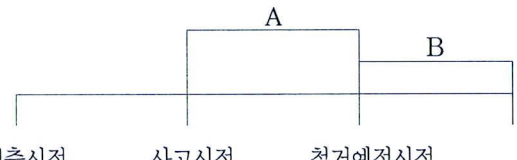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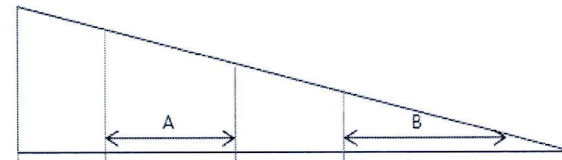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 제 5차 개정 변경대비표

※ 아래 페이지 번호는 (구)평가기준서 기준이므로 개정 책자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페이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8	4. 보험의 목적의 범위 (2) 건축물 건축물이라 함은 (중략) 선전탑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4.보험의 목적의 범위 (2) 건축물 건축물이라 함은 (중략) 선전탑 등 기타 <u>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u>	- 건축물 정의 명확화
12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2) 건축물 건축물에 있어서 (중략) 세법상 내용년수의 1.2배~2.0배를 적용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10%로 하였다.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2) 건축물 건축물에 있어서 (중략) 세법상 내용년수의 <u>1.5배</u> ~2.0배를 적용하였으며, <u>최종잔가율은 20%</u> 로 하였다.	- 최종잔가율 20%(현실 반영)
13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3) 시설 시설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별표Ⅱ】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를 적용한다. 단, 숙박 및 음식점중 【별표Ⅲ】 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년수 6년, 최종잔가율 10%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매년 15.00%로 한다.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3) 시설 시설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별표3】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를 적용한다. 단, 숙박 및 음식점중 【별표4】 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년수 <u>8년</u> , <u>최종잔가율 20%</u> 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매년 <u>10.00%</u> 로 한다.	- [별표2] 건축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 [별표2]를 [별표3]으로 변경 - 최종잔가율 20%(현실 반영)
13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4) 기계장치 가. 감가율의 산출 기계장치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2배~2.0배를 적용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10%로 하였다.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4) 기계장치 가. 감가율의 산출 기계장치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2배~2.0배를 적용하였으며, <u>최종잔가율은 20%</u> 로 하였다.	- 최종잔가율 20%(현실 반영)
13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5) 공·기구 공·기구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0배 ~2.0배를 적용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10%로 하였다.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5) 공·기구 공·기구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u>(구)세법상 내용년수를 참고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u> 로 하였다.	- 최종잔가율 20%(현실 반영)
14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6) 영업용 집기비품 영업용 집기비품의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2배 ~2.0배를 적용하였고 최종잔가율은 10%로 하였다.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6) 영업용 집기비품 영업용 집기비품의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2배 ~2.0배를 적용하였고 <u>최종잔가율은 20%</u> 로 하였다.	- 최종잔가율 20%(현실 반영)

페이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14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7) 가재 가재의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20배를 적용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7) 가재 가재의 추정내용년수는 (구)세법상 자산별 내용년수를 참조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 세법 개정으로 현 세법상 가재의 내용년수 관련 규정 부재
14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8) 차량 및 운반구 차량 및 운반구의 (중략), 최종잔가율은 10%로 하였다. (이하 생략)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8) 차량 및 운반구 차량 및 운반구의 (중략),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이하 생략)	- 최종잔가율 20%(현실 반영)
14	7. 손해사정상 유의점 (1) 건물, 건축물 가. 문화재에 대한 감가상각 제외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건조물보존법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조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에 있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7. 손해사정상 유의점 (1) 건물, 건축물 가. 문화재에 대한 감가상각 제외 <u>문화재보호법에</u> 지정된 건조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에 있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
15	7. 손해사정상 유의점 (1) 건물, 건축물 나. 복합구조건물의 내용년수 해당구조, (중략), 간이철재쇠파이프조일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년수 및 감가율을 적용한다.	7. 손해사정상 유의점 (1) 건물, 건축물 나. 복합구조건물의 내용년수 해당구조, (중략), 간이철재쇠파이프조, <u>컨테이너</u> 일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년수 및 감가율을 적용한다.	- 컨테이너에 대한 건물평가규정 부재 - 【별표1】 건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에 컨테이너 추가
16	7. 손해사정상 유의점 (1) 건물, 건축물 마. 모델하우스의 평가 모델하우스의 (중략) 내부를 수시로 개조하는 부분만을 모델하우스로 구분평가하고 주된 구조의 추정내용년수는 건물 구조별 내용년수를 따른다.	7. 손해사정상 유의점 (1) 건물, 건축물 마. 모델하우스의 평가 모델하우스의 (중략) <u>내부를 수시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부분과 상설 구조물을 구분평가한다. 인테리어의 내용년수는 해당사업 전시기간으로 하고 상설구조물의 추정내용년수는 【별표1】 건물 구조별 내용년수를 따른다. 다만, 상설 모델하우스가 아닌 경우는 가설 존치 기간을 당해사고시점의 사업기간으로 한다.</u>	- 내부의 수시로 개조하는 부분(인테리어)의 내용년수를 해당사업 전시기간으로 함으로써 현실적인 감가율을 적용토록 함
16	7. 손해사정상 유의점 (1) 시설 가. (생략) <u>< 신 설 ></u>	7. 손해사정상 유의점 (1) 시설 가. (생략) 나. <u>유의사항</u> <u>건물의 종물이나 부속설비로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특약이 없는 한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에</u>	- p.43 “2. 시설의 범위” 조문을 본 조항으로 단순 이동 (현 기준서상 “시설의 범위”의 내용이 임차인이 설치한 것만 시설이고 건물주가 설치한 것은 시설이 아닌 것으로 오해 소지)

페이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u>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보험의 목적물은 시설에 해당된다. 다시말하면, 임차인이 부착하거나 설치한 물건이 건물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속설비로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컨대, 임차인이 벽을 새로 보강했거나 지붕을 다시 이음으로써 임차인이 부가한 "벽재료"와 "기와"는 건물주의 소유권에 흡수되므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u></p>	
23,24	<p>제1편 총론 I.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 평가의 중요성 손해보험의 사명은 (중략)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76조,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5조) (중략) 무효가 되며(상법 제669조,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중략) 보상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상법 제674조,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이하생략)</p>	<p>제1편 총론 I.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 평가의 중요성 손해보험의 사명은 (중략)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76조) (중략) 무효가 되며 (상법 제669조) (중략) 보상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상법 제674조) (이하 생략)</p>	<p>- 회사별 보통약관 조항 번호가 상이하고 상법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므로 삭제</p>
24	<p>제1편 총론 II. 보험가액 평가의 기준 일반적으로 (중략) 기계, 장치, 영업용 집기비품류, 가재가 속하며, 교환재에는 상품이 있다. (이하생략)</p>	<p>제1편 총론 II. 보험가액 평가의 기준 일반적으로 (중략) 기계장치, 영업용 집기비품류, 가재가 속하며, 교환재에는 상품이 있다. (이하생략)</p>	<p>- 단순 문구수정</p>
36	<p>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1. 감가율의 산출 (생략) $\text{경년감가율(1년)} = \frac{\text{제조달가액 } 100\% - \text{최종잔가율 } 20\%}{\text{추정내용년수}}$ 감가율 = 경년감가율(1년) × 경과년수(경과월수/12)</p>	<p>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1. 감가율의 산출 (생략) $\text{경년감가율} = \frac{\text{제조달가액 } 100\% - \text{최종잔가율 } 20\%}{\text{추정내용년수}}$ 감가율 = 경년감가율 × 경과년수(경과월수/12)</p>	<p>- 단순 문구수정</p>
36	<p>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2. 잔가율의 수정 (2) 보통의 (중략) 경우에는 그 경과년수에 관계없이 실정에 따라 현재가액을 제조달가액의 40%이상인 것으로 본다. <u>< 신 설 ></u></p>	<p>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2. 잔가율의 수정 (2) 보통의 (중략) 경우에는 <u>건물의 개보수 및 경과년수를 감안하여 잔가율을 수정한다.</u> <u>가. 건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시 경과년수 적용</u> ① <u>제조달가액의 50% 미만을 개·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건축년도 기준</u> ② <u>제조달가액의 50% ~ 80%를 개·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건축년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보수후 경과년수를 합산, 평균한다.</u> ③ <u>제조달가액의 80% 이상일 때 : 개·보수시점을 기준한다.</u></p>	<p>- 기타 요소의 고려가 배제된 채 일괄적으로 잔가율 40%를 적용함에 따라 분쟁발생</p>

페이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37,38	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3. 손해사정상 유의사항 (1) 문화재에 대한 감가상각 제외 문화재보호법 ⁵⁾ 및 전통건조물 보존법 ⁶⁾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조물에 대하여는 (중략) 주6) 전통건조물보존법 • 전통건조물 건립, 축조된지 50년 이상되는 민가, 사찰, 향교, 서원, 사우정자 등의 건조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것을 말하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제외한다.	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3. 손해사정상 유의사항 (1) 문화재에 대한 감가상각 제외 문화재보호법 ⁵⁾ 에 의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중략) < 삭제 >	-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
38	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3. 손해사정상 유의사항 (2) 복합구조건물의 내용년수 해당구조, (중략), 간이철재쇠파이프조일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년수 및 감가율을 적용한다.	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3. 손해사정상 유의사항 (2) 복합구조건물의 내용년수 해당구조, (중략), 간이철재쇠파이프조, 컨테이너일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년수 및 감가율을 적용한다.	- 컨테이너에 대한 건물평가규정 부재 - 【별표1】 건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에 컨테이너 추가
39	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3. 손해사정상 유의사항 (4) 철거건물의 평가  건축시점 사고시점 철거예정시점 ※ A = 잔여내용년수 B = 최종잔가율(20%) 보험가액 = 제조달가액×(잔여내용년수의 총감가율+최종잔가율)	III. 감가공제액의 산출 3. 손해사정상 유의사항 (4) 철거건물의 평가  건축시점 사고시점 철거예정시점 최종잔가율(20%) ※ A = 잔여기간의 잔가율(잔여기간 x 경년감가율) B = 최종잔가율(20%) · 보험가액 = 제조달가액 × [잔여기간(사고시점에서 철거예정시점의 기간) x 경년감가율 + 최종잔가율(B)] · 잔여기간의 잔가율(A) 산정시 적용되는 경년감가율은 【별표1】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기준을 적용한다.	- 감가율 적용시 현행 평가기준을 따를 경우 여러 방법*이 제시되어 감가율 적용에 따른 이견이 발생 * 잔여내용연수 A의 총감가율을 80%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100%기준으로 계산하는 2가지 경우가 존재 - 잔여내용연수(A)의 총감가율은 【별표1】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을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80%기준으로 계산토록 함

페이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40	<p>Ⅲ. 감가공제액의 산출</p> <p>3. 손해사정상 유의사항</p> <p>(5) 모델하우스의 평가</p> <p>모델하우스의 (중략) 입증되는 경우에는 내부의 수시로 개조하는 부분만을 모델하우스로 구분평가하고 주된 구조의 추정내용년수는 건물 구조별 내용년수를 따른다.</p>	<p>Ⅲ. 감가공제액의 산출</p> <p>3. 손해사정상 유의사항</p> <p>(5) 모델하우스의 평가</p> <p>모델하우스의 (중략) 입증되는 경우에는 <u>내부를 수시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부분과 상설구조물을 구분평가한다. 인테리어의 내용년수는 해당사업 전시기간으로 하고 상설구조물의 추정내용년수는 【별표1】 건물 구조별 내용년수를 따른다. 다만, 상설 모델하우스가 아닌 경우는 가설 존치기간을 당해사고시점의 사업기간으로 한다.</u></p>	- 내부의 수시로 개조하는 부분(인테리어)의 내용년수를 해당사업기간으로 함으로써 현실적인 감가율을 적용토록 함
41	<p>제3편 건축물의 평가</p> <p>I.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p> <p>2. 건축물의 범위</p> <p>철도·궤도사업용, (중략), 선전탑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p>	<p>제3편 건축물의 평가</p> <p>I.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p> <p>2. 건축물의 범위</p> <p>철도·궤도사업용, (중략), 선전탑, <u>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u></p>	- 건축물 정의 명확화
44	<p>Ⅲ. 시설의 감가율 적용</p> <p>1. 시설의 추정내용년수 및 감가율 산출</p> <p>시설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별표Ⅱ】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를 적용한다. 단, 숙박 및 음식점중 【별표Ⅲ】 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년수 6년, 최종잔가율 10%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매년 15.00%로 한다.</p>	<p>Ⅲ. 시설의 감가율 적용</p> <p>1. 시설의 추정내용년수 및 감가율 산출</p> <p>시설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별표3】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를 적용한다. 단, 숙박 및 음식점중 【별표4】 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년수 8년, <u>최종잔가율 20%</u>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매년 <u>10.00%</u>로 한다.</p>	- 별표 번호 변경 - 최종잔가율 20%(현실 반영)
58	<p>◎ 기계류의 추정내용년수표</p> <p>【별표Ⅳ】 기계류(업종별) 추정내용년수표 참조</p>	<p>◎ 기계류의 추정내용년수표</p> <p>【별표5】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표 참조</p>	- 별표 번호 변경
59	<p>2. 최종잔가율</p> <p>최종잔가율이라 함은 (중략) 최종잔가율은 10%를 적용한다.</p>	<p>2. 최종잔가율</p> <p>최종잔가율이라 함은 (중략) <u>최종잔가율은 20%</u>를 적용한다.</p>	- 최종잔가율 20%(현실 반영)
60	<p>3. 경년감가방식 (중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정액법에 의한 경년감가율 계산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년감가율(1년) <li style="margin-left: 20px;">= $\frac{\text{제조달가액 } 100\% - \text{최종잔가율 } 10\%}{\text{추정내용년수}}$ • 감 가 율 = 경년감가율(1년) × 경과년수 • 감가공제액 = 제조달가액 × 감가율 </div>	<p>3. 경년감가방식 (중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정액법에 의한 경년감가율 계산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경년감가율</u> <li style="margin-left: 20px;">= $\frac{\text{제조달가액 } 100\% - \text{최종잔가율 } 10\%}{\text{추정내용년수}}$ • 감 가 율 = <u>경년감가율</u> × 경과년수 • 감가공제액 = 제조달가액 × 감가율 </div>	- 단순 문구수정

페이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60	4. 잔가율의 수정 전술의 정액법 감가방식에 따른 잔가율은 (중략) 다만, 운전사용조건, 유지관리조건이 양호한 기계 및 개조, 대수리를 한 기계에 대해서는 그 실태에 따라 제조달가액의 30%초과 50%이하의 범위내에서 적의수정할 수 있다.	4. 잔가율의 수정 전술의 정액법 감가방식에 따른 잔가율은 (중략) 다만, 운전사용조건, 유지관리조건이 양호한 기계 및 개조, 대수리를 한 기계에 대해서는 그 실태에 따라 제조달가액의 30%이상 50%이하의 범위내에서 적의수정할 수 있다.	- 실무 현실 반영																								
63	V. 기계 및 장치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별표Ⅱ】 업종별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V. 기계 및 장치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별표3】 업종별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 별표 번호 변경																								
64	제6편 공·기구의 평가 I. 공·기구의 정의 및 범위 2. 기구는 (중략) 작업장내의 실험기구, 측정기구는 공·기구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6편 공·기구의 평가 I. 공·기구의 정의 및 범위 2. 기구는 (중략) 작업장내의 시험 기구, 측정기구는 공·기구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 용어변경																								
65	II. 공·기구의 추정내용년수 (중략) 공·기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세 목</th> <th>추정내용년수(년)</th> <th>경년감가율</th> </tr> </thead> <tbody> <tr> <td>유압, 전동, 수동 공기구와 금속제의 공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td> <td>8</td> <td>11.25%</td> </tr> <tr> <td>금형, 주형 및 금속제모형의 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td> <td>5</td> <td>18.00%</td> </tr> <tr> <td>목형, 지형, 및 비금속제 모형의 틀, 필름, 활자, 기타 이와 유사한 것</td> <td>4</td> <td>22.50%</td> </tr> </tbody> </table>	세 목	추정내용년수(년)	경년감가율	유압, 전동, 수동 공기구와 금속제의 공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11.25%	금형, 주형 및 금속제모형의 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18.00%	목형, 지형, 및 비금속제 모형의 틀, 필름, 활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22.50%	II. 공·기구의 추정내용년수 (중략) 공·기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세 목</th> <th>추정내용년수(년)</th> <th>경년감가율</th> </tr> </thead> <tbody> <tr> <td>유압, 전동, 수동 공기구와 금속제의 공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td> <td>8</td> <td><u>10.00%</u></td> </tr> <tr> <td>금형, 주형 및 금속제모형의 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td> <td>5</td> <td><u>16.00%</u></td> </tr> <tr> <td>목형, 지형, 및 비금속제 모형의 틀, 필름, 활자, 기타 이와 유사한 것</td> <td>4</td> <td><u>20.00%</u></td> </tr> </tbody> </table>	세 목	추정내용년수(년)	경년감가율	유압, 전동, 수동 공기구와 금속제의 공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u>10.00%</u>	금형, 주형 및 금속제모형의 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u>16.00%</u>	목형, 지형, 및 비금속제 모형의 틀, 필름, 활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u>20.00%</u>	- 최종잔가율 20% 기준으로 경년감가율 변경
세 목	추정내용년수(년)	경년감가율																									
유압, 전동, 수동 공기구와 금속제의 공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11.25%																									
금형, 주형 및 금속제모형의 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18.00%																									
목형, 지형, 및 비금속제 모형의 틀, 필름, 활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22.50%																									
세 목	추정내용년수(년)	경년감가율																									
유압, 전동, 수동 공기구와 금속제의 공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u>10.00%</u>																									
금형, 주형 및 금속제모형의 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u>16.00%</u>																									
목형, 지형, 및 비금속제 모형의 틀, 필름, 활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u>20.00%</u>																									
66	III. 감가공제 공·기구에 (중략) 전체 제조달가액(100%)의 90%까지를 감가기준으로 볼 수 있다.	III. 감가공제 공·기구에 (중략) 전체 제조달가액(100%)의 80%까지 를 감가기준으로 볼 수 있다.	- 최종잔가율 20% 기준에 따른 변경																								
67	제7편 영업용 집기비품의 평가 I. 영업용 집기비품의 정의 및 범위 (중략) 1. 일반적으로 (중략) 기계라든지 Cleaning점의 (중략) 2. 소모품류는 (중략) 끈류, 레테르류와 (이하 생략)	제7편 영업용 집기비품의 평가 I. 영업용 집기비품의 정의 및 범위 (중략) 1. 일반적으로 (중략) 기계라든지 세탁소 의 (중략) 2. 소모품류는 (중략) 끈류, 라벨류 와 (이하 생략)	- 용어변경																								
70	III. 감가공제 집기비품에 (중략) 특히 집기비품의 최종잔가율은 10%이다.	III. 감가공제 집기비품에 (중략) 특히 집기비품의 최종잔가율은 20% 이다.	- 최종잔가율 20%(현실 반영)																								
71	V. 영업용 집기비품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Ⅱ】 업종별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V. 영업용 집기비품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3】 업종별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 별표 번호 변경																								

페이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74	2. 기타 주의하여야 할 사항 (4) 기계·기구 가정용 (중략) 프레스와 미싱이 (이하 생략)	2. 기타 주의하여야 할 사항 (4) 기계·기구 가정용 (중략) 프레스와 재봉틀이 (이하 생략)	- 용어변경
75	II. 평가방법 가재는 (중략),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사고의 경우 3.항의 간이평가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	II. 평가방법 가재는 (중략), 일정한 금액 이하의 사고 의 경우 3.항의 간이평가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	- “3. (2) 간이평가기준 적용대상”에 해당 기준을 명시함
75	제8편 가재의 평가 II. 평가방법 1. 평가의 기초적 사항 가재는 (중략) 다시 말해서 ① 가족의 구성인원(남녀별, 연령별) ② 가족의 생활수준(직업, 자산, 수입, 취미, 기호, 생활양식 등) ③ 수용건물의 크기, 지방적 관습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외에도 가족의 생활을 반영하는 가재는 다종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가재 상호간에는 어떤 종류의 균형이 있으며, 그것이 생활용구인 이상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가정에 있는 것이라도 수량, 품질은 특별히 가족인원별, 종류별의 구성이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다.	제8편 가재의 평가 II. 평가방법 1. 평가의 기초적 사항 가재는 (중략) 다시 말해서 ① 가족의 구성인원 ② 가족의 소득수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u>그 외에도 가족의 생활을 반영하는 가재는 다종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가재 상호간에는 어떤 종류의 균형이 있으며, 그것이 생활용구인 이상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 가정에 있는 것이라도 수량, 품질은 특별히 가족인원별, 종류별의 구성이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다.</u>	- 통계청 발표 ‘국가자산통계(97년)’- ‘가계자산’ - ‘월소득계층별 가계자산’ 및 ‘가구원수별’ 가계자산 자료 참조
76	3.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 (1)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이란 가계성 재물보험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이 가재의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여 평가하지 않고 보험가액의 결정에 영향이 큰 네가지 항목, 즉, 주택종류, 주택평수, 가족수, 월평균수입(세대주)을 조사하여 보험가액을 약식평가하는 것을 말함	3.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 (1)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이란 가계성 재물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인 가재의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여 평가하지 않고 보험가액의 결정에 영향이 큰 두가지 항목, 즉, 가족구성원수, 월평균소득(세대주) 을 조사하여 보험가액을 약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7	3.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 (2) 간이평가기준 적용대상 가재도구 소액사고 처리에 적용하며 명기가재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 (2) 간이평가기준 적용대상 가재도구 보험가액의 50% 미만 손해액의 사고 처리에 적용하며 명기가재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적용대상 명확화
77,78	3.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 (3)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표 이용방법 ① 현장 사고조사시 사고계약자의 건물종류, 실제사용평수(임대해준 경우 임대부분 제외), 가족수(계약자 본인 포함), 월평균수입(세대주의 연평균	3.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 (3)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표 이용방법 ① 현장 사고조사시 사고계약자의 가족구성원수(계약자 본인 포함), 월평균소득(세대주의 연평균 소득을 월로 환산한 금액) 을 파악하여 (이하	- 통계청 발표 ‘국가자산통계(97년)’- ‘가계자산’ - ‘월소득계층별 가계자산’ 및 ‘가구원수별’ 가계자산 자료 참조 - 산출례 추가

79,80

4. 항목별 기준액 및 조정계수표
 (2) 항목별 조정계수(금액단위 : 천원)
 주택 종류 주택 평수

주택 종류			주택 평수			
구 분	조정 계수	금 액	구 분	조정 계수	금 액	
한 옥	상	1.90	15평	상	1.06	9,280
	중	1.00		중	1.00	8,755
	하	0.60		하	0.70	6,129
양 옥	상	1.60	15평~25평 미만	상	1.50	15,561

(이하 표 생략)

월평균수입

구 분	조정 계수	금 액	구 분	조정 계수	금 액	
50만원 미만	상	1.30	150만원 이상	150~170	0.90	19,753
	중	1.00		170~200	1.00	21,948
	하	0.80		200~250	1.10	24,143
50~100만원 미만	상	1.40	250~350	1.35	29,630	

(이하 표 생략)

(3) 항목별 가중치

구 분	가 중 치(%)	단순화한 가중치(%)
주택 종류	11.80	10
주택 평수	29.99	30
가족 수	19.81	20
월평균수입	38.40	40
	100.00	100

(※ 가중치를 10단위로 단순화함)

4. 항목별 기준액 및 조정계수표
 (2) 월평균 소득금액별 조정계수(금액단위 : 만원)

월평균소득	조정계수
72미만	상:1.3, 중:1.0, 하: 0.7
72~143	
143~215	
215~287	상:1.4, 중:1.0, 하: 0.7
287~358	
358~430	
430~501	상:1.2, 중:1.0, 하: 0.8
501~573	
573~716	
716이상	상:1.5, 중:1.0, 하: 0.8

(3) 항목별 가중치

구분	가중치
월평균소득	60%
가족구성원수	40%

-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월평균소득 가중치의 재조정

81	IV. 가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V】 가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IV. 가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VI】 가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 별표 번호 변경
82	제9편 차량 및 운반구의 평가 보험개발원에서 (중략) 차량은 【별표II】에 따른다. 【별표II】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제9편 차량 및 운반구의 평가 보험개발원에서 (중략) 차량은 【별표3】에 따른다. 【별표3】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